

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다66492 판결 [보험금]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건	2000다66492 보험금
원고,상고인	1. A 2. B
피고,피상고인	C 주식회사
원심판결	대구고등법원 2000. 11. 9. 선고 99나5805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,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

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,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(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다31868 판결, 2000. 4. 25. 선고 99다68027 판결 등 참조)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,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보험모집인인 D가 원고들에게 연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를 교부하면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확정배당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, 위 예시표에는 1980. 2.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24%가 계속되는 것은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기재와 함께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확정배당금의 산출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, 비록 위 D가 위 예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배당금 산출방식이나 정기예금이율이 연 12% 이하일 때에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, 위 확정배당금 산출방식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보통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와는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.

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인 D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연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에 "이 예시표는 피보험자가 75세에 사망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이고, 1980. 2.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(연 24%)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, 확정배당금의 산출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(연 12%)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{(연 24%) + 1%}과의 이율차를 기준으로 산출되고,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확정배당예상액도 변동된다"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 및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그릇 해석하고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및 약관과 다른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.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

초가 되는 법률상·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,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,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5누4902, 4919 판결, 2000. 8. 22.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)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, 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원심 판시 정기에금이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,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.

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,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1. 11. 27.

대법관 서성(재판장) 배기원(주심) 이용우 박재윤